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5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3
2. 시·도지사에게 서면실태조사 권한 부여	10
3. 시·도지사에게 고발 요청 권한 부여	1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27.
-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공급

현행	개정안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 각 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 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u> <u>⑥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제23조 및 제25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u>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1. ~ 4. (생략)	----- ----- ----- ----- ----- -----. 1. 제11조의2에 따른 신고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u>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는</u>----- ----- ----- -----.
제24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 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24조(시정권고) ① ----- ----- ----- ----- ----- -----. <u>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2(시·도지사의 시정권고)</u>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 해당 내용을 3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24조의2 (생략)	제24조의3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제24조의3 (생략)	제24조의4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현행	개정안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u>공정거래위원회의</u>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u>공정거래위원회의</u>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u>시·도의</u>-----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u>시·도의</u>-----

□ 현행법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¹⁾,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법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조사 및 시정권고가 가능하여 지역 사회 내 대리점 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판례·심결 검토 및 경제 분석 등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 판단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2) 제24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대다수의 법률은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8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25의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의3, 3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3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2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의2,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6, 3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3, 4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5, 38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 일관성,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시·도지사에 서면실태조사 권한 부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3(시·도지사의 실태조사) ① 시·도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현행법 제27조의2는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서면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역 사회 내 대리점거래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서면실태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⁴⁾, 시·도지사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공급업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대리점과 거래하여 중복조사의 가능성이 높음.

5)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도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시·도지사에 고발 요청 권한 부여

-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고발) ① ~ ③ (생략)	제33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u> ,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u>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제33조(고발) ①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⁷⁾,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정(2015년) 당시부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음.

○ 개정안은 고발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대리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법상 고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 고발 요청기관 고유의 정책적 견지⁸⁾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지사까지 의무 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96년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공소제기 후 고발 취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되었으며,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음.

8) (중기부) 중소기업 피해, (조달청) 국가재정 영향, (감사원) 사회적 파급효과

문 의 처
02)6788-5114